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99
----------	-------

발의연월일 : 2025. 7. 29.

발 의 자 : 김주영 · 이학영 · 서영석
임호선 · 양문석 · 장철민
박 정 · 박민규 · 정진욱
염태영 · 강득구 · 김태선
한정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 도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

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5제1항제1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 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1.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취득세를 면제한다.	1. <u>2027년 12월 31일</u> ----- -----.
2.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u>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 ----- <u>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u>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